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91호 2021. 5. 17.(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24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남해군 조례 제2525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 조례 제2526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
남해군 조례 제2527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528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20
남해군 조례 제2529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남해군 조례 제2530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531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남해군 조례 제2532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0
남해군 조례 제2533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남해군 조례 제2534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7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53
남해군 고시 제202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6
남해군 고시 제2021-77호	도로명주소 고시	57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688호	공시송달 공고	60
남해군 공고 제2021-699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63
남해군 공고 제2021-70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5
남해군 공고 제2021-708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8
남해군 공고 제2021-717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03
남해군 공고 제2021-718호	2021년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09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24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풍부한”을 “있는”으로, “중에서”를 “중에서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해군의회의원”을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위촉”을 “군수가 위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해군의회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해군의회”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해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을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으로, “의회의원인”을 “군의회 의원인”으로,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을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전단 중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25호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규제의 존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	남해군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 · 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p><근거규정></p> <p>○</p> <p><주요내용></p> <p>○</p> <p>○</p> <p>○</p> <p><존치 필요성></p> <p>○</p>		
추진일정	<p>○ 개선방안 마련(~0.00.)</p> <p>○ 개정 완료(~0.00.)</p>		

남해군 조례 제2526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남해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남해군 수입 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남해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남해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남해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체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 명
남 해 군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2527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남해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남해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체계의 수립 및 운영
 - 4.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 3. 마을활동가·자치전문가 육성사업
-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및 인센티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15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① 수탁기관은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주사무소를 남해군에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성실한 수행
2.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수행한 결과의 보고

- 3. 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보고
- 4. 다른 법인·단체 등에게 무단 양도·전대 금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28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남해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급의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통학생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비용지급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신청사유의 타당성
-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농어촌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야간학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비용지급을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통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학택시비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 1.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다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거주로 통학하지 않을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택시비를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29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 를 “규정함으로써” 로,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을 “도모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4조의2의 제목 “(심의회의 업무)” 를 “(심의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건축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심의·의결 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4(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중 “사용료” 를 “행정재산 사용료” 로 한다.

제27조제4항제6호 중 “종업원” 을 “상시 종업원”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 을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17조제6항·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를 “영 17조제7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 을 “100” 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회” 를 “6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이” 를 각각 “규칙에서” 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규칙이” 를 “규칙에서”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공용면적 계산방법

가. 건물의 공용면적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남해군 조례 제2530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협약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해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 등 지원
2. 협약보증 지원
3. 이차보전 지원
4.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전자상거래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조(협약보증 지원)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 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협약보증을 의하여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 ② 이차보전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연 3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대출받은 금액은 이차보전에 상계하지 않는다.
- ④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융자금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군 소관부서 국장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휴대폰	() -
	상시근로자수	계 명 (남성 명, 여성 명)	업태/종목	/

신 청 내 용	구 분	세부신청내용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보조금신청금액	총 사업비 : 만원		
		보조금 : 만원, 자부담 만원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세금체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체납 중		
각종 보조사업 등 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지원내용 및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개인정보제공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남해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p>
--------	---

본인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인)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기기) 1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 1부 ※가족소유라도 제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명	남해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세부 사업내용					
사업장 현황	보유구분	소 유	전 세	월 세	비고	
	면적	m ²				
사업비 명세	종 류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보 조	자부담		
사업효과	구 분	년 연 평균			사업완료 1년 후 기대 평균	
	매출액	천원			천원	

남해군 조례 제2531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라운드골프장”을 “그라운드골프장, 면단위 생활체육관, 파크골프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 중 “스포츠파크 야구장”을 “스포츠파크 야구장, 파크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개정 후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평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남해읍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0,000		
		조명	"	90,000	90,000		
		트랙		무료	무료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220,000	270,000		
	인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50,000	70,000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2시간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2시간	150,000	200,000		
		냉·난방시설	"	30,000	30,000		
		복싱장	-	무료	무료		
		스포츠댄스장	-	무료	무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0,000		
		조명	"	80,000	80,000		
	바다,나비, 치자,비자 (천연잔디)	필드	"	220,000	270,000		
		조명		30,000	30,000		
	나비,비자 (인조잔디)	필드	"	50,000	70,000		
		조명	"	20,000	20,000		
	야구장	인조구장	"	130,000	160,000		
		조명	"	110,000	110,000		
	풋살 경기장	필드	-	무료	무료		
테니스장	코트	-	무료	무료			
족구장	군일원	구장	-	무료	무료		
공설 테니스장	남해읍	코트	1회 3시간/면	11,000	16,500		
생활체육관 (탁구장)	남해읍	개인	1회/3시간	2,000	3,000		
		월회원	개인	1회/3시간	30,000	30,000	
			단체	1회/3시간	20,000	20,000	
생활체육관 (사격장)	남해읍	-	1회/1시간	10,000	15,000		
게이트볼장	읍면	-	-	무료	무료		
그라운드 골프장	읍면	-	-	무료	무료		
금해정	궁도장	사대	1일/1회	20,000	25,000		
무도관	검도관	-	1회/3시간	30,000	40,000		
	유도관	-	1회/3시간	30,000	40,000		
면단위 생활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30,000	추가	
		체육이외	1회/2시간	50,000	60,000	추가	
파크골프장	읍면	회원	월 사용료	30,000	30,000	추가	
		비회원	일반인	1회/ 2시간	4,000	4,000	추가
			청소년		3,000	3,000	추가
			어린이		2,000	2,000	추가
		장비대여		1,000	1,000	추가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2. 야외공연장 사용료

시설물별	기 준	요금(평일)	비 고
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	1일 1회 (4시간 기준)	100,000원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 산한 금액으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532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개인단원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단체단원은 군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동우회 등(이하 “단체”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는 사람 또는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단,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방재단원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남해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면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등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7. 재난지역의 응급 복구(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단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방재단 간사
 -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방재분야 전문가
 - 나. 방재업무에 관한 경험이 많은 사람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협의회는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⑦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③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군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교육 또는 훈련으로 교육 또는 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자문) ① 군수 및 단장은 필요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활동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증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3.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제3항제1호의 필수경비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⑤ 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16조(출입증 발급)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남해군 자율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533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를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해군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 을 “(협의회의 심의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를 “예비군·민방위대”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민방위계획

제3조제2항 중 “진주보훈지청장, 국군기무사 611기무부대 남해담당관” 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군사안보지원부대 남해담당관” 으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을 “통영해양경찰서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작전과장, 남해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
4. 소방담당 간사 :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지원본부장” 을 “지원본부의 본부장” 으로, “지원본부장은 읍·면장” 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군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을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를 두고, 읍·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 라 한다)를 둔다.
- ③ 지원본부는 군청 내에 두고, 읍·면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 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 조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경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이 된다.
- ⑨ 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34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뜻)” 을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군의 책무)” 를 “(군수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 을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4조 중 “군내” 를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을 “(기본방침)”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서” 를 “군수는” 으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를 “사업비의” 로, “일부” 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의 대상자는” 을 “지원 대상은” 으로, “제2조 제8호, 제10호, 제11호” 를 “제2조제8호·제10호·제11호” 로, “제9호에 따른 마을회로한다” 를 “농어촌 마을회로 한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농산물(수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 나. 농수산물 가공기반 조성 관련 사업
- 다.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에 관한 사항

28. 공공(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
- 나.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화 교육, 홍보 및 시설·장비 지원
- 다. 공공급식 지역산 우수 식재료 확대 장려금(차액) 및 포장재 지원

- 라. 공공급식 차량 배송비 지원
- 마. 공공급식 식생활 개선 교육 및 시설 지원
- 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사.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육성
- 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 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차. 초등돌봄교실 간식(도시락) 지원
- 29.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 사업 등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은” 을 각각 “군수는”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남해군 남해군” 을 “남해군”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7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21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연번	기준점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도근점	19119	중부	150805.92 289659.54	251114.770 289734.183	254.264	127°58'52.3088"	34°51'7.1930"	2021-02-16	창선면 지족리 산119	표철	남해군청	신규
2	도근점	19120	중부	150831.17 289701.87	251140.019 289776.518	261.138	127°58'53.9848"	34°51'7.9988"	2021-02-16	창선면 지족리 산115-1	표철	남해군청	신규
3	도근점	13116	중부	146411.86 293506.91	246720.757 293581.634	188.794	128°01'21.9759"	34°48'43.3790"	2021-02-18	삼동면 봉화리 산67	표철	남해군청	신규
4	도근점	13117	중부	146372.24 293466.43	246681.131 293541.160	191.681	128°01'20.3678"	34°48'42.1067"	2021-02-18	삼동면 봉화리 산67	표철	남해군청	신규
5	도근점	13118	중부	146318.33 293465.07	246627.230 293539.799	196.149	128°01'20.2927"	34°48'40.3583"	2021-02-18	삼동면 봉화리 산63-1	표철	남해군청	신규
6	도근점	13119	중부	142043.04 295973.97	242351.978 296048.834	24.401	128°02'57.2378"	34°46'20.8054"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65-10	표철	남해군청	신규
7	도근점	13120	중부	141985.27 296021.31	242294.206 296096.170	30.576	128°02'59.0753"	34°46'18.9149"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65-10	표철	남해군청	신규
8	도근점	13121	중부	141924.18 296148.54	242233.126 296223.404	44.086	128°03'4.0531"	34°46'16.8899"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0-5	표철	남해군청	신규
9	도근점	13122	중부	141816.75 296267.64	242125.695 296342.498	60.730	128°03'8.6916"	34°46'13.3638"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1-1	표철	남해군청	신규
10	도근점	13123	중부	141748.03 296292.08	242056.976 296366.943	60.244	128°03'9.6244"	34°46'11.1259"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1-7	표철	남해군청	신규
11	도근점	13124	중부	141589.57 296395.72	241898.517 296470.595	52.356	128°03'13.6345"	34°46'5.9494"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1-5	표철	남해군청	신규
12	도근점	13125	중부	141560.7 296383.36	241869.647 296458.233	52.128	128°03'13.1366"	34°46'5.0169"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6-1	표철	남해군청	신규
13	도근점	13126	중부	141447.03 296387.39	241755.979 296462.267	54.531	128°03'13.2483"	34°46'1.3275"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6-1	표철	남해군청	신규
14	도근점	13127	중부	141352.98 296390.17	241661.932 296465.044	61.972	128°03'13.3187"	34°45'58.2751"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9-1	표철	남해군청	신규
15	도근점	13128	중부	141266.43 296329.07	241575.374 296403.948	67.174	128°03'10.8809"	34°45'55.4875"	2021-02-18	삼동면 물건리 산278-1	표철	남해군청	신규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명칭	기준점 영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6	도근점	13129	중부	141208.57 296369.62	241517.521 296444.502	74.712	128°03'12.4515"	34°45'53.5966"	2021-02-18	삼동면 물길리 산278-1	표철	남해군청	신규
17	도근점	13130	중부	141107.01 296291.84	241415.963 296366.720	77.153	128°03'9.3516"	34°45'50.3279"	2021-02-18	삼동면 물길리 산229-5	표철	남해군청	신규
18	도근점	13131	중부	141010.54 296294.97	241319.489 296369.857	78.057	128°03'9.4352"	34°45'47.1967"	2021-02-18	미조면 송정리 산114-7	표철	남해군청	신규
19	도근점	13132	중부	146474.70 291091.24	246783.557 291165.957	159.360	127°59'46.9684"	34°48'46.2051"	2021-04-29	삼동면 영지리 산172-1	각인	남해군청	신규
20	도근점	13133	중부	146496.02 291084.68	246804.876 291159.397	162.829	127°59'46.7186"	34°48'46.8990"	2021-04-29	삼동면 영지리 산172-1	각인	남해군청	신규
21	도근점	13134	중부	146509.43 291067.32	246818.288 291142.041	166.797	127°59'46.0411"	34°48'47.3397"	2021-04-29	삼동면 영지리 산172-1	각인	남해군청	신규

남해군 고시 제2021 - 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난음천(지방하천)
2. 성 명 : 우창0
3. 주 소 : 경북 청도군 매전면 00길
4. 점용목적 : 상수도 관로매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2058번지(211-1 인근)
6. 점용면적 : 25㎡(상수관 50m)
7. 점용기간 : 2021. 5. 6. ~ 2025.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1 - 7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55-21 외 3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5)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남해군 도로명 주소 고시내역 관리(4월)

입주부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서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원리 56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로 55-21	20210402	20090427	남해발전과 창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과 절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금동리 459-1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강진로309번길 18-3	20210402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서교리 43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202번길 16-1	20210402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박리 265-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61-25	2021040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39	2021040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서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원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129-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658	2021040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신리 1124-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양로로 157	20210407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갈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15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058	20210407	20090427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창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4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신로43번길 31-22	20210407	20100915	고신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3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53	2021040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서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원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문의리 1047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강진로 696	20210412	20090427	남해발전과 창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과 절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신리 7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80-25	20210413	20090427	행정리틀 이용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자 온 마을이 오동나무로 뒤덮인 데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박리 28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41-22	2021041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66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542	2021041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통화리 신349-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양로 179-47	20210415	20090427	내산은 고죽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지환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양로라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원리 산11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268번길 28-21	2021041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신87-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면 남서대로2240번길 50	2021041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천리 53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795번길 87	2021041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박리 82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05번길 15	20210415	20091023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금동리 18-2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강진로468번길 00-151	20210416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대구리 413-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024	2021042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박리 2, 2-3, 2-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64번길 59-7	20210421	20091023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원리 198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87번길 39-47	20210421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신리 55-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71-8	20210422	20090427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창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60-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131-6	2021042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4-8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16-13	20210422	20091023	미조로236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용리 39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966-1	20210423	20090427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창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용리 71-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857-31	20210423	20090427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창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용리 71-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857-33	20210423	20090427	고려 흥신왕때 개칭한 창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상추리 1982-2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남해대로796번길 2-20	20210423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양저리 304-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 13-30	2021042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번리 294-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59번길 23	20210423	20100915	화진도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39	2021042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서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원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문의리 247-2	경상남도 남해군 삼천면 강진로 412	20210426	20090427	남해발전과 창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과 절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46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화방로492번길 99	20210426	20090427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진리 240-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30	20210428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7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00-3	20210430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688호

공시송달 공고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사망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남 해 군 수

1.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 나.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번지 외 41필지
- 다. 사업내용 : 하천정비 L=540m , 교량설치 3개소
- 라. 사업기간 : 2021. 3. ~ 2022.12.(예정)
- 마.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번지 외 41필지 / 10,029㎡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5. 7. ~ 2021. 5. 21.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다.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1년 5,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 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 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상주면 상주리	1733-1	묘	163	-	최두0			
2	"	1795-1	전	14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최춘0			
3	"	1796-1	답	382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정진0		서부산0000 조합	근저당권
4	"	1680-1	답	41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강현0		동남해0000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5	"	1673-1	답	17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정진0		서부산0000 조합	근저당권
6	"	1672-1	답	234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정진0		서부산0000 조합	근저당권

남해군 공고 제2021 - 699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년 4월 27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남해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 3. 사업장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1번지 일원
- 4. 사 업 내 용 : 13,098㎡(급경사지 정비 L=728.0m)
- 5. 공 고 기 간 : 2021. 5. 10. ~ 2021. 5. 24. 까지
-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토 지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남해군)	지 번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상주면 양아리	산 270-1	임	임	676*1/3	676*1/3	김도*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임	임	676*1/3	676*1/3	김세*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임	임	676*1/3	676*1/3	김송*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상주면 양아리	1255-1	임	임	51	51	미등기1		정성*1		토지 대장상 소유자
상주면 양아리	1257-1	전	전	568	568	미등기2		정성*2		토지 대장상 소유자
상주면 양아리	1272-1	전	전	54	54	정군*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			
상주면 양아리	1266-1	전	전	14	14	정달*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상주면 양아리	1256-1	전	전	796	796					
상주면 양아리	산 272-1	임	임	183	183	정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상주면 양아리	산 272-2	임	임	52	52					

남해군 공고 제2021 - 70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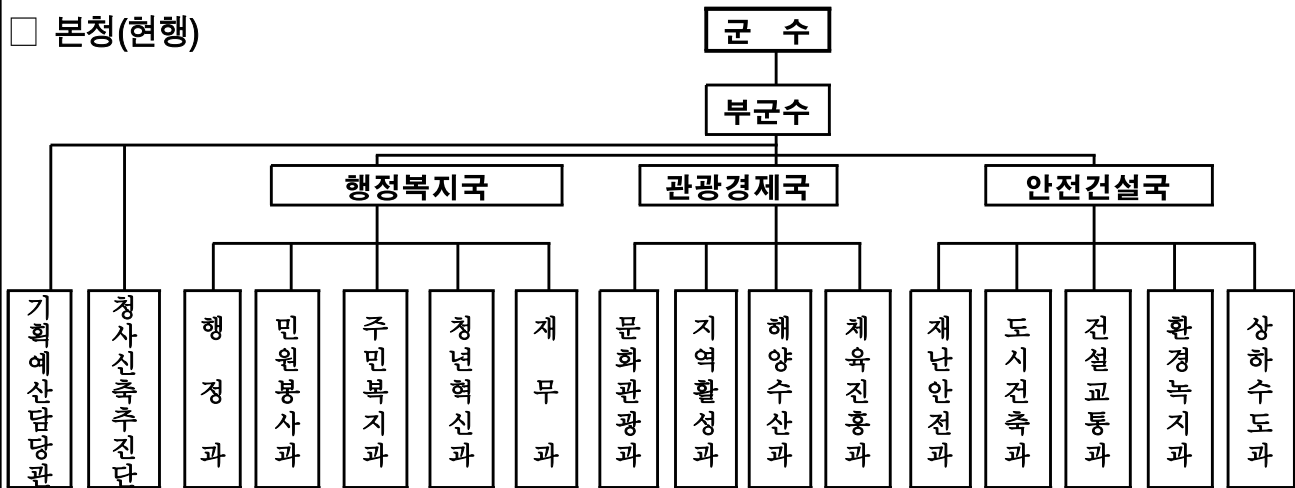
- 가. 변화하는 정부정책과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조직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를 위해 보건소 2과 신설(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다.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를 분리하여 산림보호와 조성, 산림소득증대, 휴양림조성,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1과(산림공원과) 신설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과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부군수 직속기관인 환경물관리단 신설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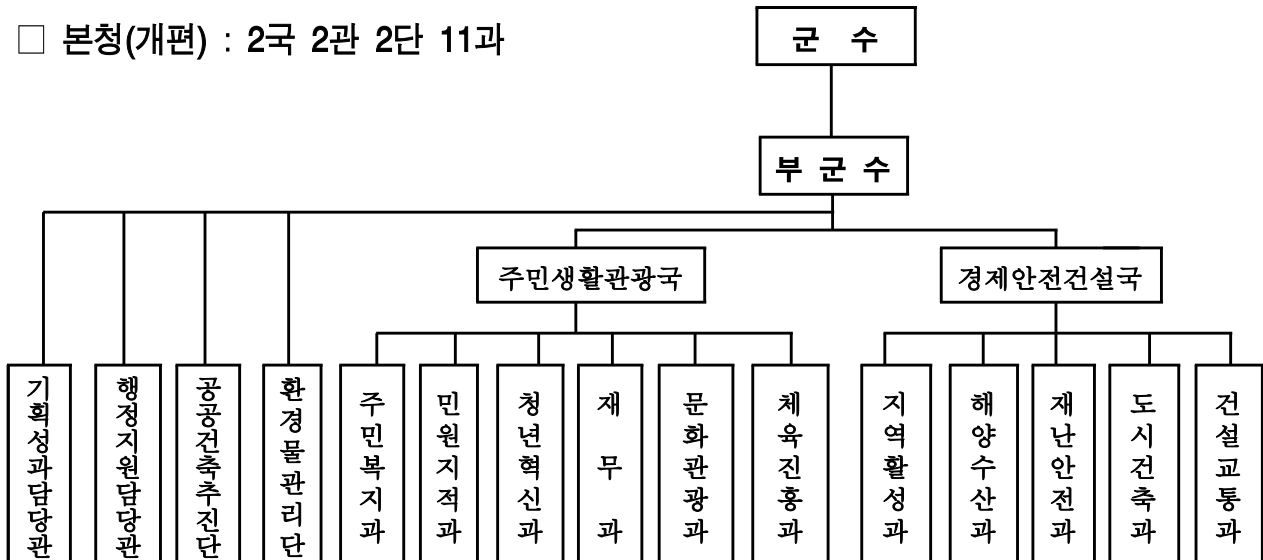
- 가. 부군수 직속 보조기관의 설치(안 제3조)
 - 기획성과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공공건축추진단, 환경물관리단 조직 정비
- 나. 국 체제 개편(안 제4조)

- 주민생활관광국, 경제안전건설국 2국 체제 개편
- 다. 보건소 직제 개편(안 제7조)
 -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신설
- 라. 농업기술센터 1과 신설에 따른 업무 분장(안 제12조)
 - 농업기술센터 내 산림공원과 신설에 따른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공원 녹지 사무분장
- 마. 기구개편사항
 - 당초 : 3국 1관 1단 14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9면(141팀)
 - 변경 : 2국 2관 2단 11과 2직속기관(보건소 2과 신설, 센터 1과 신설) 1의회 1읍9면(142팀)

□ 본청(현행)



□ 본청(개편) : 2국 2관 2단 11과



※ 직속기관 : 보건소 2과 신설(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1과 신설(산림공원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번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성과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공공건축추진단, 환경물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성과담당관”으로, “예산, 전략개발, 홍보, 감사, 법무규제개혁”을 “군민소통, 성과관리, 전략개발뉴딜, 홍보, 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지원담당관의 분장사무는 행정, 예산, 후생, 법무규제개혁, 정보전산, 통신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공공건축추진단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 공공건축,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⑤ 환경물관리단의 분장사무는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을 “주민생활관광국, 경제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복지국)”을 “(주민생활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민생활관광국에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청년혁신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 ② 주민생활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복지정책,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

- 2.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등록에 관한 사항
- 3. 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4.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에 관한 사항
- 5.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섬발전, 관광시설,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
- 6.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관광경제국)”을 “(경제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안전건설국에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 ② 경제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2. 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 3.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4. 도시개발,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5.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8조제2항 중 “보건지소장”을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감염병 예방에 관한사항
- 3.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 4.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 6.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 7.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사항
- 8. 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조례 제249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u>기획예산담당관</u>을 둔다.</p> <p>② <u>기획예산담당관</u>의 분장사무는 정책개발과 <u>군정기획·조정, 예산, 전략개발, 홍보, 감사, 법무규제개혁</u>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u>기획성과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공공건축추진단, 환경물관리단</u>---</p> <p>② <u>기획성과담당관</u>----- ----- <u>군민소통, 성과관리, 전략개발뉴딜, 홍보, 감사</u>----- -----.</p> <p>③ <u>행정지원담당관</u>의 분장사무는 행정, 예산, 후생, <u>법무규제개혁, 정보전산, 통신관제</u>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④ <u>공공건축추진단</u>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 공공건축,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⑤ <u>환경물관리단</u>의 분장사무는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제3조의2(한시기구) ① 부군수 밑에 <u>한시기구</u>로 <u>청사신축추진단</u>을 둔다.</p> <p>② <u>청사신축추진단</u>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삭 제></p>
<p>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u>을 둔다.</p>	<p>제4조(국의 설치) ----- ----- <u>주민생활관광국, 경제안전건설국</u>-----.</p>
<p>제5조(행정복지국) ① <u>행정복지국</u>에 <u>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청년혁신과, 재무과</u>를 둔다.</p> <p>② <u>행정복지국장</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행정, <u>군민소통, 후생, 정보전산, 통신관제</u>에 관한 사항</p>	<p>제5조(주민생활관광국) ① <u>주민생활관광국</u>에 <u>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청년혁신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u>를 둔다.</p> <p>② <u>주민생활관광국장</u>----- -----.</p> <p>1. 복지정책, 노인복지, <u>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사행정</u>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2. <u>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정보, 부동산등록에 관한 사항</u></p> <p>3. <u>복지정책,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사행정</u>에 관한 사항</p> <p>4. <u>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u></p> <p>5. <u>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제6조(관광경제국) ① <u>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를 둔다.</u></p> <p>② <u>관광경제국장</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u>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시설, 관광콘텐츠,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u></p> <p>2. <u>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u></p> <p>3. <u>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u></p> <p>4. <u>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2. ----- <u>지적재조사, 공간정보</u>-----</p> <p>3. <u>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u></p> <p>4. <u>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에 관한 사항</u></p> <p>5. <u>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섬발전, 관광시설,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u></p> <p>6. <u>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관한 사항</u></p> <p>제6조(경제안전건설국) ① <u>경제안전건설국에 -----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u>-----.</p> <p>② <u>경제안전건설국장</u>-----.</p> <p>1. <u>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u></p> <p>2. <u>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u></p> <p>3. <u>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도시개발,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u></p> <p>5. <u>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재 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환경 녹지과, 상하수도과를 둔다.</p> <p>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기획, 방재복구, 민방위, 하천관 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공 공건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행정 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 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 시설, 공원녹지,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 림휴양에 관한 사항 5. 상하수도 관리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p><삭 제></p>
<p>제7조(설치) ①·② (생 략)</p> <p><신 설></p> <p>③ (생 략)</p>	<p>제7조(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조(소장) ① (생 략)</p> <p>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 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8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보건 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p>
<p>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 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 방문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 	<p>제9조(소관사무)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예방에 관한사항 3.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4. <u>감염병 관리 및 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u></p> <p>5. <u>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u></p> <p>6. <u>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u></p> <p>7. <u>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u></p> <p>② (생 략)</p> <p>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4. <u>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u></p> <p>5. <u>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u></p> <p>6. <u>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u></p> <p>7. <u>공공보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사항</u></p> <p>8. <u>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소관사무)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u></p>

남해군 공고 제2021 - 70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개정이유

- 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인력 반영(11명)
- 나. 전략개발뉴딜팀 인력보강(2명), 성관관리팀 신설(2명), 보건소 감염병 전담 인력(3명) 정원 반영
- 다. 문화관광과 관광콘텐츠팀 폐지(1명),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 폐지(1명)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폐지(2명) 감축 인력 반영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조례안 제2조)
 - 총정원 659명 ⇒ 673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46명 ⇒ 660명(증 1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조례안 제4조 별표3)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	면
현행	659	367	13	125	19	135
개정	673	354	13	142	20	144
증감	증14	감13	0	증17	증1	증9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9명” 을 “67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6명” 을 “660명”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조례 제249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59명</u>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6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73명</u>----- -----.</p> <p>1. ----- <u>660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 원의 직급별 정원 등은 별표 4와 같다.</p>	<p><삭 제></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 2020. 12. 8.>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73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643					
4급	4	3		1		
4~5급	1	1				
5급	34	14	3	2	5	10
6급이하 소계	603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개 정					개 정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직속기관 농업 기술센터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직속기관 농업 기술센터
총계	659					673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629					643					
4급	4	4				4	3		1		
5급	34	16	3	1	4	34	14	3	2	5	
6급이하 소계	590					60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기특연구사	1					1					
농촌지도사	27					27					

남해군 공고 제2021 - 708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부군수 보좌기관·직속기관 및 국체제 개편에 따른 직급 및 사무분장을 정함
 - 나. 일부 부서장 복수 직렬 조정
3. 주요내용
 - 가. 국체제 개편에 따른 부서장 직급 정비(안 제3조)
 - 주민생활관광국, 경제안전건설국 체제 개편
 - 기획성과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공공건축추진단, 환경물관리단 직급 정비
 - 나. 과신설 및 정비, 팀신설 및 폐지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4조 별표1, 안 제6조 별표2, 안 제9조 별표3)
 - 다. 소장 직급 정비(안 제5조)
 -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라. 보건소 2과 체제에 따른 직급 정비(안 제5조의2)
 -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직급 신설

- 마.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에 따른 직급 정비(안 제8조)
 - 산림공원과장 직급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생활관광국: 주민생활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년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경제안전건설국: 경제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활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도시건축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기획성과담당관: 기획성과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정지원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환경물관리단: 환경물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 을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하부조직) 남해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보건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2.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3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1185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p> <p>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년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2.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활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3.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녹지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3조(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 ----- -----.</p> <p>1. 주민생활관광국: 주민생활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년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2. 경제안전건설국: 경제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활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도시건축과장·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3. 기획성과담당관: 기획성과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현 행	개 정 안
<p>4. <u>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p>5. <u>청사신축추진단: 청사신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u><신 설></u></p> <p>제5조(소장 등) ① <u>남해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u></p> <p>②·③ (생략)</p> <p><u><신 설></u></p> <p>제8조(하부조직) <u>남해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를 둔다.</u></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u>행정지원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p>5. <u>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6. <u>환경물관리단: 환경물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5조(소장 등) ① ----- ----- <u>지방기술서기관</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하부조직) <u>남해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p> <p>1. <u>보건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u></p> <p>2. <u>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u></p> <p>제8조(하부조직)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상주면장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u> 또는 <u>지방보건사무관</u>으로 보한다.</p> <p>4. ~ 10. (생략)</p>	<p>제12조(읍·면장의 직급)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u> ----- -----.</p> <p>4. ~ 10.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1 - 708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국체제 개편(3국→2국) 및 신설 부서 정원 조정

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인력 반영(11명)

다. 행정수요 신규 증대분야 인력 보강 [(전략개발뉴딜팀 인력보강(2명), 성관관리팀 신설(2명), 보건소 감염병 전담 인력(3명)]

라. 문화관광과 관광콘텐츠팀 폐지(1명),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 폐지(1명)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폐지(2명) 감축 인력 반영

3. 주요내용

가. 총정원 조정 : 643명 → 673명(증 14명)

○ 4급 : 4명 ⇒ 4명(변동없음)

○ 4~5급 : 0명 ⇒ 1명(신설)

○ 5급 : 34명 ⇒ 34명(변동없음)

- 6급 : 163명 ⇒ 165명(증 2명)
- 7급 : 190명 ⇒ 196명(증 6명)
- 8급 : 169명 ⇒ 173명(증 4명)
- 9급 : 68명 ⇒ 69명(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	면
현행	659	367	13	125	19	135
개정	673	354	13	142	20	144
증감	증14	감13	0	증17	증1	증9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규칙안 제2조)

구 분	계 급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계	당초	659	367	13	71	54	19	135	
	변경	673	354	13	74	68	20	144	
정무직	군 수	1	1						
일반직	소계	당초	629	364	13	71	27	19	135
		변경	643	351	13	74	41	20	144
	4급	당초	4	4					
		변경	4	3		1			
	4~5급	당초	0	0					
		변경	1	1					
	5급	당초	34	16	3	1	4	1	9
		변경	34	14	3	2	5	1	9
	6급	당초	163	94	4	11	12	5	37
		변경	165	90	4	12	17	5	37
	7급	당초	190	110	2	35	4	7	32
		변경	196	106	2	35	8	8	37
	8급	당초	169	101	3	21	4	4	36
		변경	173	99	3	21	6	4	40
	9급	당초	68	39	1	3	2	2	21
		변경	69	38	1	3	4	2	21
		전문경력관	1				1		

남 해 군 공 보

(90) 제 691 호

2021년 5월 17일

구 분	계 급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정직	별정6급	1	1					
연구직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농촌지도사	27				2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118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터		
총계	합 계		673	354(2)	13	74	68	20	144
	정무직		1	1					
	일반직		643	351(2)	13	74	41	20	144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정무직계	군수	정무직	1	1					
일반직계			643	351(2)	13	74	41	20	144
일반직	4급 합계		4	3		1			
일반직	4급	서기관	1	1					
일반직	4급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일반직	4급	기술서기관	1			1			
일반직	5급 합계		34	14	3	2	5	1	9
일반직	5급	행정	4	3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1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2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	6	6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보건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해양수산·보건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일반직	5급	농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일반직	5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지·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5급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일반직	6급 합계		165	90	4	12	17	5	37
일반직	6급	행정	22	18	3			1	
일반직	6급	세무	1	1					
일반직	6급	해양수산	4	4					
일반직	6급	보건진료	3			3			
일반직	6급	시설	5	5					
일반직	6급	행정·전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	4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	7	7					
일반직	6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전산	7						7
일반직	6급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	11	2					9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녹지	2	2					
일반직	6급	행정·녹지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	4	4					
일반직	6급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공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시설	22	21					1
일반직	6급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6급	농업·농촌지도	4				4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	3					1	2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시설·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6	2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녹지	4				4		
일반직	6급	행정·환경	4	4					
일반직	6급	행정·농업·시설	9	4					5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농촌지도	5				5		
일반직	6급	농업·공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운전	2	1	1				
일반직	6급	통신운영	1	1					
일반직	6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196	106	2	35	8	8	37
	합계								
일반직	7급	행정	32	22	2			2	6
일반직	7급	세무	6	2				1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1	4				1	6
일반직	7급	전산	1	1					
일반직	7급	공업	5	4					1
일반직	7급	해양수산	7	7					
일반직	7급	보건	12				12		
일반직	7급	의료기술	3				3		

일반직	7급	간호	7			7			
일반직	7급	보건진료	9			9			
일반직	7급	환경	1	1					
일반직	7급	시설	9	8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전산	2	2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	4	1					3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18	8				2	8
일반직	7급	행정·농업	9	1			3		5
일반직	7급	행정·농업·녹지	7	2			3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	3	3					
일반직	7급	행정·시설	22	22					
일반직	7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일반직	7급	농업·시설	2	1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7급	보건·환경	1	1					
일반직	7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일반직	7급	운전	6	6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녹지	1	1					
일반직	8급	합계	173	99	3	21	6	4	40
일반직	8급	행정	31	24	1			1	5
일반직	8급	세무	4	3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6	8				1	7
일반직	8급	전산	1	1					
일반직	8급	농업	3				3		
일반직	8급	녹지	2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	5	5					
일반직	8급	환경	1	1					
일반직	8급	보건·세무	1	1					
일반직	8급	의료기술	6			6			
일반직	8급	보건진료	6			6			
일반직	8급	시설	11	7					4
일반직	8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8급	행정·세무	5	2					3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12	3				1	8
일반직	8급	행정·농업·시설	14	3			1	1	9
일반직	8급	행정·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사서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4	3				1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2	12					
일반직	8급	행정·시설·공업	1	1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일반직	8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3	3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간호	8			8			
일반직	8급	행정·보건·환경	3	3					
일반직	8급	운전	7	6		1			
일반직	8급	숙기	2		2				
일반직	8급	공업	7	5				2	
일반직	9급 합계		69	38(2)	1	3	4	2	21
일반직	9급	행정	20	13(2)	1				6
일반직	9급	세무	4	2					2
일반직	9급	사회복지	7	2				1	4
일반직	9급	농업	1				1		
일반직	9급	해양수산	2	2					
일반직	9급	환경	3	3					
일반직	9급	시설	5	2					3
일반직	9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9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9급	행정·시설	8	8					
일반직	9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9급	행정·사회복지	3	2					1
일반직	9급	행정·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행정·농업·녹지·공업	6	1			2		3
일반직	9급	행정·전산·보건	1			1			
일반직	9급	운전	2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2					1	1
일반직	전문경 력관 나군	농기계교관	1				1		
별정직계	별정8급 상당	일반비서	1	1					
연구직계	연구사	기록연구	1	1					
자조직계	지도사	농촌지도	27				27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남해군 공고 제2021 - 717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6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5,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전화 055-860-3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경영체를 말한다)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남해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지급금액 및 방법)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남해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류와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년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4.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5.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 4.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 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 4.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농어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관계자 5명 이내

다.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718호

2021년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 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1. 공 고 명 : 2021년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1.5.13.~6.11.(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지정대상지(소재) 및 면적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2021.6.11일까지
 - 가. 접 수 처 : 남해군 환경녹지과(☎055-860-3662~3664,FAX 055-860-3707)
 -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의2[붙임참조]
 - 다.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남해군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정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남해군 환경녹지과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8. 경과조치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녹지과(☎055-860-3662~3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관리주체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주소	성명		
	계					69,758	4,793						
남해군	남해군 제2021-1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산163-1	11,674	912			300	하○호		
					산163-3	1,603	568				남해군		
					산163-4	211	84	산사태	산지사방		남해군		
					산172	8,788	643			300	하○호		
					산172-1	733	275				남해군		
	소계					23,009	2,482						
	남해군 제2021-2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산107	19,023	749	산사태	산지사방		인천 남구 수봉남로18번길 00-00(용현동)	서○원	
	소계					19,023	749						
	남해군 제2021-3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30-2	17,070	167	산사태	산지사방		거제시 옥포동 1276 옥포3차 덕산터문 000-000	강○원	
	소계					17,070	167						
남해군 제2021-4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282-1	1,101	373			000		전○지		
				183-2	440	131	산사태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000-0		윤○성		
소계					1,541	504							
남해군 제2021-5호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증현리	1548구	65,877	134	토석류	계류보전			국(농림축산식품부)		
소계					65,877	134							
남해군 제2021-5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산55원	2,182	366	산사태	산지사방		0000-0	경주김씨수문공파○원중		
소계					2,182	366							
남해군 제2021-6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성면 당항리	908구	1,699	391	토석류	계류보전			국(농림축산식품부)		
소계					1,699	391							